**「형법」**

[법률 제54호, 2016.6.3., 개정]

**□ 개 요**

일본의 형법은 범죄에 관한 총칙 규정 및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한 법이다. 1907년 공포·19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에서 육법을 구성하는 법률 중 하나이며, 기본적인 법령이다. 다만, 모든 형벌 법규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법은 제1편 총칙(제1조~제72조)과 제2편 죄(제73조~제264조) 등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編　総則  第一章　通則  第二章　刑  第三章　期間計算  第四章　刑の執行猶予  第五章　仮釈放  第六章　刑の時効及び刑の消滅  第七章　犯罪の不成立及び刑の減免  第八章　未遂罪  第九章　併合罪  第十章　累犯  第十一章　共犯  第十二章　酌量減軽  第十三章　加重減軽の方法  **第二編　罪**  第一章　削除  第二章　内乱に関する罪  第三章　外患に関する罪  第四章　国交に関する罪  第五章　公務の執行を妨害する罪  第六章　逃走の罪  第七章　犯人蔵匿及び証拠隠滅の罪  第八章　騒乱の罪  第九章　放火及び失火の罪  第十章　出水及び水利に関する罪  第十一章　往来を妨害する罪  第十二章　住居を侵す罪  第十三章　秘密を侵す罪  第十四章　あへん煙に関する罪  第十五章　飲料水に関する罪  第十六章　通貨偽造の罪  第十七章　文書偽造の罪  第十八章　有価証券偽造の罪  第十八章の二　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に関する罪  第十九章　印章偽造の罪  第十九章の二　不正指令電磁的記録に関する罪  第二十章　偽証の罪  第二十一章　虚偽告訴の罪  第二十二章　わいせつ、姦淫及び重婚の罪  第二十三章　賭博及び富くじに関する罪  第二十四章　礼拝所及び墳墓に関する罪  第二十五章　汚職の罪  第二十六章　殺人の罪  第二十七章　傷害の罪  第二十八章　過失傷害の罪  第二十九章　堕胎の罪  第三十章　遺棄の罪  第三十一章　逮捕及び監禁の罪  第三十二章　脅迫の罪  第三十三章　略取、誘拐及び人身売買の罪  第三十四章　名誉に対する罪  第三十五章　信用及び業務に対する罪  第三十六章　窃盗及び強盗の罪  第三十七章　詐欺及び恐喝の罪  第三十八章　横領の罪  第三十九章　盗品等に関する罪  第四十章　毀棄及び隠匿の罪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형  제3장 기간 계산  제4장 형의 집행유예  제5장 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 및 소멸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제8장 미수죄  제9장 병합죄  제10장 누범  제11장 공범  제12장 작량감경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  **제2편 죄**  제1장 삭제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무집행방해죄  제6장 도주죄  제7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  제8장 소란죄  제9장 방화 및 실화죄  제10장 출수(出水) 및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11장 교통방해죄  제12장 주거침입죄  제13장 비밀침해죄  제14장 아편흡식에 관한 죄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제16장 통화위조죄  제17장 문서위조죄  제18장 유가증권위조죄  제18장의2 지불용 카드 전자 기록에 관한 죄  제19장 인장위조죄  제19장의2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죄  제20장 위증죄  제21장 허위고소죄  제22장 추행, 간음 및 중혼죄  제23장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제25장 공무원 부패죄  제26장 살인죄  제27장 상해죄  제28장 과실상해죄  제29장 낙태죄  제30장 유기죄  제31장 체포 및 감금죄  제32장 협박죄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죄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제36장 절도 및 강도죄  제37장 사기 및 공갈죄  제38장 횡령죄  제39장 장물 등에 관한 죄  제40장 손괴 및 은닉죄 |